

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[별표 1] (규칙 제7조 관련) <신설 2025. 2. 20.>

후원회 명칭(약칭)

구 분	명 칭	약 칭
1. 정당의 중앙당후원회	○○당중앙당후원회	—
2.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	○○당중앙당후원회○○시·도 연락소	—
3. 정당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	○○당(가칭)중앙당창당준비 위원회후원회	—
4. 국회의원후원회	국회의원○○○후원회	—
5.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연락소	국회의원○○○후원회○○ 연락소	—
6. 시·도의회의원후원회	○○시·도의회의원○○○ 후원회	○○시·도의원○○○후 원회
7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	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 ○○○후원회	○○구·시·군의원○ ○○후원회
8. 대통령후보자(예비후보자)의 후원회	대통령후보자(예비후보자) ○○○후원회	○○○후원회(대통령선거)
9.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	○○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○○○후원회	○○○후원회(대통령선거경선)
10.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(예비 후보자)의 후원회	○○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 (예비후보자)○○○후원회	○○○후원회(국회의원선거)
11.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의 연락소	○○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 ○○○후원회○○연락소	○○○후원회연락소 (국회의원선거)
12. 시·도지사후보자(예비후보자)의 후원회	○○시·도지사후보자(예비 후보자)○○○후원회	○○○후원회(○○시· 도지사선거)
13. 자치구·시·군의 장후보자 (예비후보자)후원회	○○구청장·시장·군수후보자 (예비후보자)○○○후원회	○○○후원회(○○구청장 ·시장·군수선거)
14.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후보자 (예비후보자)후원회	○○시·도○○선거구시·도 의회의원후보자(예비후보자) ○○○후원회	○○○후원회(○○시· 도의원선거)
15.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후보자(예비후보자)후원회	○○구·시·군○○선거구 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 (예비후보자)○○○후원회	○○○후원회(○○구· 시·군의원선거)
16.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		
가. 당대표경선	○○당대표경선후보자○○○ 후원회	○○○후원회(○○당대표 경선)
나.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 경선	○○당○○○경선후보자 ○○○후원회	○○○후원회(○○당 ○○○경선)

주: 제6호, 제12호 및 제14호 후원회의 약칭 사용 시 ‘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’는 ‘시’로, ‘도, 특별
자치도’는 ‘도’로 작성할 수 있다.